

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규남, 김영철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박영한, 서상열,
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인, 유정희, 이상욱,
이성배, 이종태, 이종환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오늘날 전통사찰들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및 힐링명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. 이에 따라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역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신설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
5.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·관리·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</u></p> <p>5. <u>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경비</u></p> 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	추계대상여부	판단 내용
제7조(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) 제항	제4호	△	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문의결과 범위 및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
	제5호	△	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, 관련 정보 또한 적어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안 제7조(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)제1항제4호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문의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
 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실태조사¹⁾ 실시 비용을 추정하려면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, 연구활동경비²⁾, 일반관리비(간접비)에 등을 파악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 - 안 제7조(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)제1항제5호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문의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
 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추정하려면 안전사고의 유형(Ex. 낙상, 끼임, 가시절립 외상사고 등)을 분류하고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한편 그에 대응할 만한 예방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
 - ⇒ 특히 사고유형별, 발생빈도, 발생장소 등에 따라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므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함

1) [조사기간 변수 존재] 통상 실태조사는 6개월 내외이나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고, 향후 전통사찰의 문화재적 특성 등에 따라 조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
 2) 특히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 전수조사(현재 60개소)를 실시할 경우 각 사찰을 1회이상 현장방문하여 조사하여도 60번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향후 실태조사에 대한 적정규모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임
 ※ 연구활동경비로는 여비, 문헌 및 자료구입비, 조사 및 전산처리비, 회의비, 임차료, 교통통신비 등이 소요될 수 있음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